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602
----------	-------

발의연월일 : 2025. 10. 15.

발 의 자 : 이용우 · 민병덕 · 김 윤
이주희 · 박지혜 · 박정현
임미애 · 백승아 · 박민규
박 정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만 규정하고 하위법령에 위임해 판단준거를 제시하고 있는데 하위법령의 제한적 기준에 근거한 근로복지공단의 의학적 자문기구의 판단이 지배적인 준거로 적용되는 실정임. 하지만 법원은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돼야 하는 것이 아니고,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그 증명이 있다고 판단한다”는 법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음(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022 판결,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두5501 판결,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12530 판결 등 다수).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행정소송에서 반복적으로 패소하는 경우가 많고 재해자는 장기 소송으로 인해 산재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지속됨.

이에 근로복지공단의 재해 인정기준과 대법원의 판례법리를 일치시켜 공정하고 신속한 재해보상으로 국민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 37조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인정할 수 있다. 이때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사회 평균인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후단 신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 ----- ----- ----- -----. ----- ----- ----- ----- <u>. 이 경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인정할 수 있다.</u> 이때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사회평균인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② ~ ⑤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